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며,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과 등가로 교환된 가상자산이 저장된 제1전자지갑이 설치되고, 특정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수량과 매수금의 매수정보를 전송하는, 매수자 단말기;

비상장코인을 발행하며,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고,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제2전자지갑이 설치되고,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전송하는, 비상장코인 매도서버; 및

상기 매수정보와 상기 매도정보를 수신하여 검증하고 매칭시켜, 상기 매수자 단말기 및 상기 비상장코인 매도서버로 각각 전송하며, 상기 매수자 단말기로부터 매수승인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제1전자지갑의 매수총액이 상기 제2전자지갑의 매도총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상기 제2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 상기 비상장코인을 전송하고,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2전자지갑으로 상기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는, 현금으로의 환가 가치를 산정하여, 상기 제1전자지갑의 가상자산과 상기 제2전자지갑의 비상장코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검증하는 가치평가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는, 이전 거래시의 상기 매수자 단말기에 해당하는 상기 제1전자지갑과 매수자 개인정보 및 상기 비상장코인 매도서버에 해당하는 상기 제2전자지갑과 운영주체정보의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검증하는 검증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제1전자지갑의 가상자산의 교환 가치가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에 의해 검증되고 평가되어 인정된 경우에만,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가 상기 매수자 단말기의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에 대한 매매 참여를 허용하고,

상기 가치평가모듈은 기준거래소 실시간 가격을 통해 상기 제1전자지갑의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비상장코인 발행주체와 거래플랫폼 운영주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정에 따라 산출된 기준가를 통해 상기 제2전자지갑의 비상장코인을 평가하고,

상기 검증모듈은, 매도위탁받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비상장코인의 총액에 상응하여, 상기 비상장코인 매도서버에 해당하는 발행주체기업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자산, 지적자산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담보로 설정하고, 해당 담보비용에 해당하는 비상장코인의 총액을 매도 등록하도록 하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매수자 개인정보 및 상기 운영주체정보는 암호화되어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며,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제3전자지갑이 설치되고,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전송하는, 매도자 단말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는,

상기 매수정보와 상기 매도정보를 수신하여 검증하고 매칭시켜, 상기 매수자 단말기 및 상기 매도자 단말기로 각각 전송하며, 상기 매수자 단말기로부터 매수승인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제1전자지갑의 매수총액이 상기 제3전자지갑의 매도총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상기 제3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 상기 비상장코인을 전송하고,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3전자지갑으로 상기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상기 검증모듈은 이전 거래시의 상기 매수자 단말기에 해당하는 상기 제1전자지갑과 매수자 개인정보 및 상기 매도자 단말기에 해당하는 상기 제3전자지갑과 매수자 개인정보의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는, 상기 매수자 단말기와 상기 매도자 단말기간 경매방식 또는 역경매방식으로 매도 또는 매수를 수행하는 경매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상자산은, 가상화폐 또는 NF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비상장코인 거래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비상장코인의 매매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 [0003] 최근 혁신적인 사업모형을 제시하며 등장한 스타트업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 [0004] 이러한 혁신기업 중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되며 시장의 확장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 핀터레스트 등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한 회사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의 경우 우아한형제들, 쿠팡, L&P코스메틱, 크래프톤,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위메프 등의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 [0005] 해당 기업의 급격한 성장세로 인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상장주식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 [0006] 이에 따라 최근 활성화되기 시작한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은 비상장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0007] 이때,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선행기술인 한국등록특허 제10-2357627호(2022년02월04일 공고) 및 한국공개특허 제2021-0057641호(2021년05월21일 공개)에는, 매도자 단말로부터 비상장주식 매도요청을 수신하고, 매수자 단말로부터 매수요청을 수신하며, 매도요청내 매도호가와 매수요청 내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거래제안알림을 제공하는 구성과, 비상장기업으로부터 주주명부를 등록받고, 사용자 단말로부터 매도주문 또는 매수주문 리스트를 표시하며, 매도주문 또는 매수주문에 표시된 매매항목에 대한 협상채널을 제공하고, 수량 및 가격이 협의되면 비상장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기 등록된 주주명부에 기초하여 매수자 단말로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제공하는 구성이 각각 개시되어 있다.
- [0008] 다만, 비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코인의 경우 여전히 개인 간 직거래 방식 또는 신용으로 매매가 되고 있어 매수자의 계약상 거래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 [0009] 또한, 현금을 지급하고도 코인을 못받는 경우도 존재하여 시장이 작을 수 밖에 없고 사기의 위험성이 높다. 이에, 비상장코인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요구된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 [0011] (특허문헌 0001)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9-0143106호 (가치평가에 의한 다종류 가상화폐 통용화 플랫폼 제공시스템, 2019.12.30)
- (특허문헌 0002)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19-0088435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주식 코인 거래 시스템, 2019.07.26)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12] 본 발명의 사상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비상장코인 거래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비상장코인의 매매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 [0014] 기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며,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과 등가로 교환된 가상자산이 저장된 제1전자지갑이 설치되고, 특정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수량과 매수금의 매수정보를 전송하는, 매수자 단말기; 비상장코인을 발행하며,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고,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제2전자지갑이 설치되고,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전송하는, 비상장코인 매도서버; 및 상기 매수정보와 상기 매도정보를 수신하여 검증하고 매칭시켜, 상기 매수자 단말기 및 상기 비상장코인 매도서버로 각각 전송하며, 상기 매수자 단말기로부터 매수승인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제1전자지갑의 매수총액이 상기 제2전자지갑의 매도총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상기 제2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 상기 비상장코인을 전송하고,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2전자지갑으로 상기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를 포함하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제공한다.
- [0016] 여기서,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는, 현금으로의 환가 가치를 산정하여, 상기 제1전자지갑의 가상자산과 상기 제2전자지갑의 비상장코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검증하는 가치평가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 [0018] 또한,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는, 이전 거래시의 상기 매수자 단말기에 해당하는 상기 제1전자지갑과 매수자 개인정보 및 상기 비상장코인 매도서버에 해당하는 상기 제2전자지갑과 운영주체정보의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검증하는 검증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 [0020] 또한, 상기 매수자 개인정보 및 상기 운영주체정보는 암호화되어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로 전송될 수 있다.
- [0022] 또한,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며,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제3전자지갑이 설치되고,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전송하는, 매도자 단말기;를 더 포함할 수 있다.
- [0024] 또한,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는, 상기 매수정보와 상기 매도정보를 수신하여 검증하고 매칭시켜, 상기 매수자 단말기 및 상기 매도자 단말기로 각각 전송하며, 상기 매수자 단말기로부터 매수승인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제1전자지갑의 매수총액이 상기 제3전자지갑의 매도총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상기 제3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 상기 비상장코인을 전송하고,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3전자지갑으로 상기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상기 검증모듈은 이전 거래시의 상기 매수자 단말기에 해당하는 상기 제1전자지갑과 매수자 개인정보 및 상기 매도자 단말기에 해당하는 상기 제3전자지갑과 매수자 개인정보의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검증할 수 있다.
- [0026] 또한,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는, 상기 매수자 단말기와 상기 매도자 단말기간 경매방식 또는 역경매방식으로 매도 또는 매수를 수행하는 경매모듈을 포함할 수 있다.
- [0028] 또한, 상기 가상자산은, 가상화폐 또는 NFT일 수 있다.
- [0030] 한편,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는,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며,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과 등가로 교환된 가상자산이 저장된 제1전자지갑이 설치된, 매수자 단말기로부터 특정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수량과 매수금의 매수정보를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비상장코인을 발행하며,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고,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제2전자지갑이 설치된, 비상장코인 매도서버로부터,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를 통해, 상기 매수정보와 상기 매도정보를 수신하여 현금으로의 환가 가치를 산정하여, 상기 제1전자지갑의 가상자산과 상기 제2전자지갑의 비상장코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검증하는 단계;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가 매수정보와 매도정보의 진위성을 검증하고 매수정보와 매도정보를 매칭시켜, 상기 매수자 단말기 및 상기 비상장코인 매도서버로 각각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가 상기 매수자 단말기로부터 매수승인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제1전자지갑의 매수총액이 상기 제2전자지갑의 매도총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상기 제2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 상기 비상장코인을 전송하고,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2전자지갑으로 상기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법을 제공한다.
- [0032] 여기서,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며,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제3전자지갑이 설치된, 매도자 단말기를 통해,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34] 또한, 상기 가상자산은, 가상화폐 또는 NFT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36] 본 발명에 의하면, 비상장코인 거래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비상장코인의 매매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매수정보와 매도정보의 진위성을 검증하여 내부 위변조에 의한 허위 디지털기록 조작에 따른 가상자산과 허위 전자지갑 계정과 허위 매매정보를 식별하거나, 외부 해킹으로부터의 위변조를 식별하여서, 가상자산과 비상장코인간 허위거래를 차단하도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38]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성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도 1의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현도를 예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법에 의한 매매거래 순서도를 예시한 것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9]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기술한 특징을 갖는 본 발명의 실시예를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0041]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며,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과 등가로 교환된 가상자산이 저장된 제1전자지갑(111)이 설치되고, 특정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수량과 매수금의 매수정보를 전송하는, 매수자 단말기(110), 비상장코인을 발행하며,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고,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제2전자지갑(121)이 설치되고,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전송하는,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 및 매수정보와 매도정보를 수신하여 검증하고 매칭시켜, 매수자 단말기(110) 및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로 각각 전송하며, 매수자 단말기(110)로부터 매수승인정보를 수신하면 제1전자지갑(111)의 매수총액이 제2전자지갑(121)의 매도총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제2전자지갑(121)으로부터 제1전자지갑(111)으로 비상장코인을 전송하고, 제1전자지갑(111)으로부터 제2전자지갑(121)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를 포함하여, 비상장코인 거래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요지로 한다.

[0043] 이하,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기술한 구성의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0045] 우선, 매수자 단말기(110)는 인증절차를 거쳐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에 등록하여 비상장코인 거래에 참여하는 단말기로서,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 또는 거래어플이 탑재되어 설치되며, 비상장코인을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과 등가로 교환된 가상자산, 예컨대 가상화폐 또는 NFT(Non-Fungible Token)가 저장된 메타마스크 등의 제1전자지갑(111)이 설치되고, 특정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수량과 매수금의 매수정보를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로 전송한다.

[0046] 여기서, 매수자 단말기(110)는 비상장코인 매수시 제1전자지갑(111)의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시하였으나, 이외에 현금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0047] 한편, 제1전자지갑(111)의 가상자산의 교환 가치가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에 의해 검증되고 평가되어 인정된 경우에만,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가 매수자 단말기(110)의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에 대한 매매 참여를 허용하여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할 수 있다.

[0049] 다음,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는 비상장코인을 발행하여 매도하고자 하는 구성으로서, 인증절차를 거쳐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에 등록하며,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 또는 거래어플이 설치되며,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메타마스크 등의 제2전자지갑(121)이 설치되고,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로 전송한다.

[0051] 다음,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매수자 단말기(110)로부터의 매수정보 및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로부터의 매도정보를 각각 수신하여, 매수정보와 매도정보의 진위성을 검증하고 매수정보와 매도정보를 매칭시켜, 매수자 단말기(110) 및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로 각각 전송한다.

- [0052] 여기서, 매수정보에 포함된 매수자 개인정보 및 매도정보에 포함된 운영주체정보는 암호화되어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버(130)로 전송되고 복호화되도록 하여 외부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할 수 있다.
- [0053] 또한,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매수자 단말기(110)로부터 매수승인정보를 수신하면, 제1전자지갑(111)의 매수총액이 제2전자지갑(121)의 매도총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제2전자지갑(121)으로부터 제1전자지갑(111)으로 비상장코인을 전송하여 저장하도록 하고, 제1전자지갑(111)으로부터 제2전자지갑(121)으로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수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전송하여 저장하도록 한다.
- [0054] 이와 같이,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매수정보와 매도정보의 진위성을 검증하여서, 내부 위변조에 의한 허위 디지털기록조작에 따른 가상자산과 허위 전자지갑 계정과 허위 매매정보를 식별하거나, 외부 해킹으로부터의 위변조를 식별하여서, 가상자산과 비상장코인간 허위거래를 차단하도록 할 수 있다.
- [0056] 한편,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가치평가모듈(131)을 통해서, 현금으로의 환가 가치를 산정하여, 제1전자지갑(111)의 가상자산과 제2전자지갑(121)의 비상장코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검증하여서, 매매거래 이전에 가상자산과 비상장코인의 가치에 따른 매수금과 매수금이 적절한지 또는 정당한지 판단하여 매매거래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수자 단말기(110)와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로 통보하여 매매거래에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 [0057] 여기서, 가치평가모듈(131)은 기준거래소 실시간 가격을 통해 제1전자지갑(111)의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비상장코인 발행주체와 거래플랫폼 운영주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정에 따른 산출된 기준가를 통해 제2전자지갑(121)의 비상장코인을 평가할 수 있다.
- [0059] 또한,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검증모듈(132)을 통해서 해당 거래플랫폼 또는 업무협약관계인 다른 거래플랫폼에서의 이전 거래시의 매수자 단말기(110)에 해당하는 제1전자지갑(111)과 매수자 개인정보 및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에 해당하는 제2전자지갑(121)과 운영주체정보의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매매거래 참여자를 검증하여서 매매거래를 제한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 [0060] 또한, 검증모듈(132)은, 매도위탁받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비상장코인의 총액에 상응하여,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에 해당하는 발행주체기업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자산, 지적자산 등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담보로 설정하고, 해당 담보비율에 해당하는 비상장코인의 총액을 매도 등록하도록 하여, 비상장코인의 교환가치가 확보되도록 하여, 교환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무분별한 비상장코인의 발행을 제한하며, 스캠코인(scamcoin) 등의 허위 매도 물량의 위탁이나 등록을 차단하고, 예기치 않은 허위 매도 물량의 거래 이행 후에도 담보를 전제로 매수자에 매수금을 대신 반환하고 담보를 해당 비율만큼 회수하여 매수자를 보호하여서,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할 수도 있다.
- [0061] 또한,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검증모듈(132)에 의해 담보의 가치변동에 따라 비상장코인의 총 매도 물량을 연동하여 설정하여 등록하도록 하여서, 비상장코인의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발행을 제한하여 비상장코인의 평가절하를 최소화하도록 할 수도 있다.
- [0062] 또한,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매수한 비상장코인의 매수금액에 상응하는 일정비율만큼의 발행주체기업의 지분에 대한 일시적 단기간 임시소유권을 매수자 단말기(110)로 연동하여 전송하여서, 검증 및 등록시 필터링되지 않은 스캠코인과 같이 시장가치가 전무한 비상장코인의 거래시에도 매수자의 피해를 보완하도록 할 수도 있다.
- [0064] 한편, 앞서, 매도 주체로서, 비상장코인을 발행하는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를 예시하였으나, 비상장코인에 대한 개인간 거래(P2P 코인거래)가 가능하도록 매도자 단말기(140)가 포함될 수 있다.
- [0065] 즉, 매도자 단말기(140)에는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며,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메타마스크 등의 제3전자지갑(141)이 설치되고,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로 전송할 수 있다.
- [0066] 또한,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매수정보와 매도정보를 수신하여 검증하고 매칭시켜, 매수자 단말기(110) 및 매도자 단말기(140)로 각각 전송하며, 매수자 단말기(110)로부터 매수승인정보를 수신하면 제1전자지갑(111)의 매수총액이 제3전자지갑(141)의 매도총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제3전자지갑(141)으로부터 제1전자지갑(111)으로 비상장코인을 전송하고, 제1전자지갑(111)으로부터 제3전자지갑(141)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동일하게, 검증모듈(132)은 이전 거래시의 매수자 단말기(110)에 해당하는 제1전자지갑(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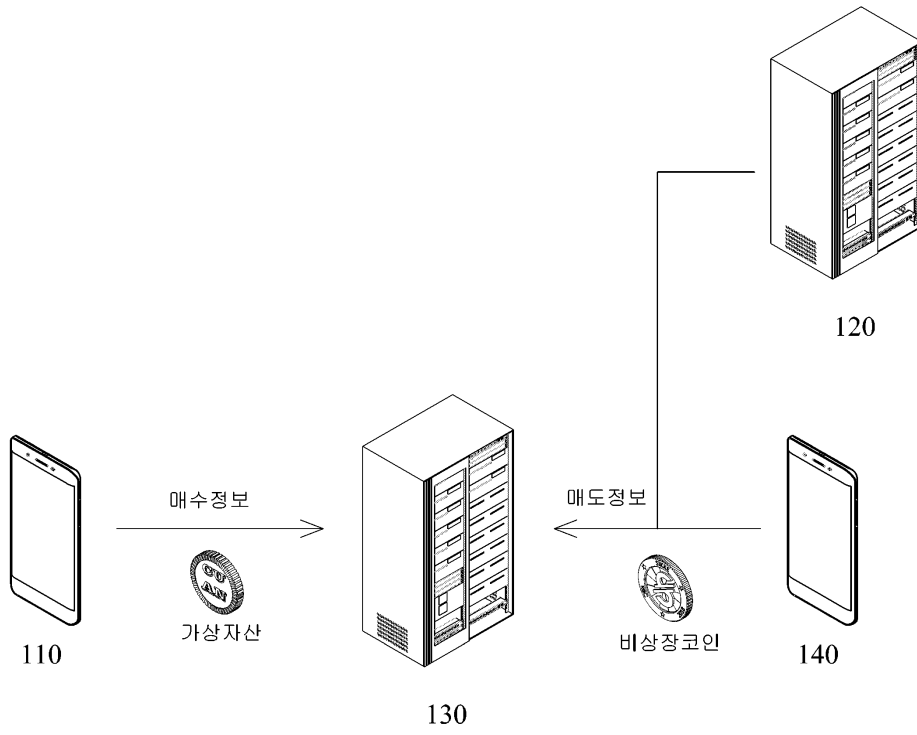
과 매수자 개인정보 및 매도자 단말기(140)에 해당하는 제3전자지갑(141)과 매도자 개인정보의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검증하도록 할 수도 있다.

- [0067] 예컨대,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가치평가모듈(131)을 통해서, 현금으로의 환가 가치를 산정하여, 제1전자지갑(111)의 가상자산과 제3전자지갑(141)의 비상장코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검증하여서, 매매거래 이전에 가상자산과 비상장코인의 가치에 따른 매수금과 매수금이 적절한지 또는 정당한지 판단하여 매매거래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수자 단말기(110)와 매도자 단말기(140)로 통보하여 매매거래에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 [0068] 여기서, 가치평가모듈(131)은 기준거래소 실시간 가격을 통해 제1전자지갑(111)의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해당 비상장코인의 이전 거래시의 거래가의 변동과 발행량을 분석하여 제3전자지갑(141)의 비상장코인을 평가할 수 있다.
- [0069] 또한,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검증모듈(132)을 통해서 해당 거래플랫폼 또는 업무협약관계인 다른 거래플랫폼에서의 이전 거래시의 매수자 단말기(110)에 해당하는 제1전자지갑(111)과 매수자 개인정보 및 매도자 단말기(140)에 해당하는 제3전자지갑(141)과 매도자 개인정보의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매매거래 참여자를 검증하여서 매매거래를 제한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위험부담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 [0071] 또한,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를 통한 비상장코인에 대한 개인간 거래시에,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해당 거래플랫폼 또는 업무협약관계인 다른 거래플랫폼에서의 이전 거래에 따른 가상자산의 환가 가치의 변동내역과 비상장코인의 보유수량의 변동내역을 검증하여서, 후속하는 N차 거래시, 신속한 거래승인, 거래제한 또는 거래차단을 수행하도록 하고, N차 거래의 해당 매매금액에 상응하는 가상자산과 비상장코인을 각각 보유하지는 검증하여 가상자산과 비상장코인간 허위거래를 차단하도록 할 수 있다.
- [0072]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동일하게,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개인이 N차 거래시에도, 1차 매수자 단말기(110)로부터 매수한 비상장코인의 매수금액에 상응하는 일정비율만큼의 발행주체기업의 지분에 대한 일시적 단기간 임시소유권을 2차 매수자 단말기(110)로 연동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제공하여서, N차 거래시 후속 매수자의 피해를 보완하도록 할 수도 있다.
- [0074] 한편,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경매모듈(133)을 통해, 매수자 단말기(110)와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 또는 매도자 단말기(140)간 경매방식 또는 역경매방식으로 매도 또는 매수를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 [0076] 또한,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 또는 매도자 단말기(140)의 요청시에,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대금으로 이에 상응하는 현금, 상품권, 여행권, 환전가능 포인트 또는 상품구매가능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다.
- [0078] 또한,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 또는 매도자 단말기(140)로부터의 이전 거래 실적이 없는 비상장코인의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으로의 등록시에,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등록하여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비상장코인의 테마와 유사한, NFC 코인, 오라클 코인, 아이오티(IoT) 코인, 스마트컨트랙트(smart contracts) 코인, 디파이(DeFi) 코인, 간편결제 플랫폼 코인, 게임시장 코인, 광고산업 코인, 데이터저장 서비스 코인, 분산화거래소 코인, 연산력 임대 서비스 코인, 인증 서비스, 코인, 콘텐츠 생산 및 중개 코인, 플랫폼 코인, SNS 콘텐츠 코인, 비트코인 그룹 관련 코인,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 등의 비상장코인의 사고여부 또는 범죄관련여부 등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매도량을 제한하거나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해당 테마와 유사한 비상장코인의 거래량과 발행량과 시가총액과 시세정보(가격변동추이 등) 등의 코인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매도량을 결정하도록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해당 테마의 유행이 지나가나, 해당 테마의 기술력에 대한 시장성이 없거나, 해당 테마의 거래시장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재정적으로 건전하거나 시장성이 있는 비상장코인을 선별하여 매도 등록하도록 하여서 매수자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도록 할 수 있다.
- [0080] 또한,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해당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코인을 매수한 매수자 단말기(110)로부터 비상장코인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예치 또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매수자 단말기(110)로부터 비상장코인을 전송받아 해당 전자지갑에 저장하고, 예치기간 또는 대여기간에 따른 이자를 매수자 단말기(110)로 제공하도록 하여 매수자 단말기(110)의 단순 보유에 따른 시세변동에 의한 손익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자수익을 제공하여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할 수도 있다.
- [0081] 한편, 이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 상품권, 여행권, 환전가능 포인트 또는 상품구매가능 포인트로 지급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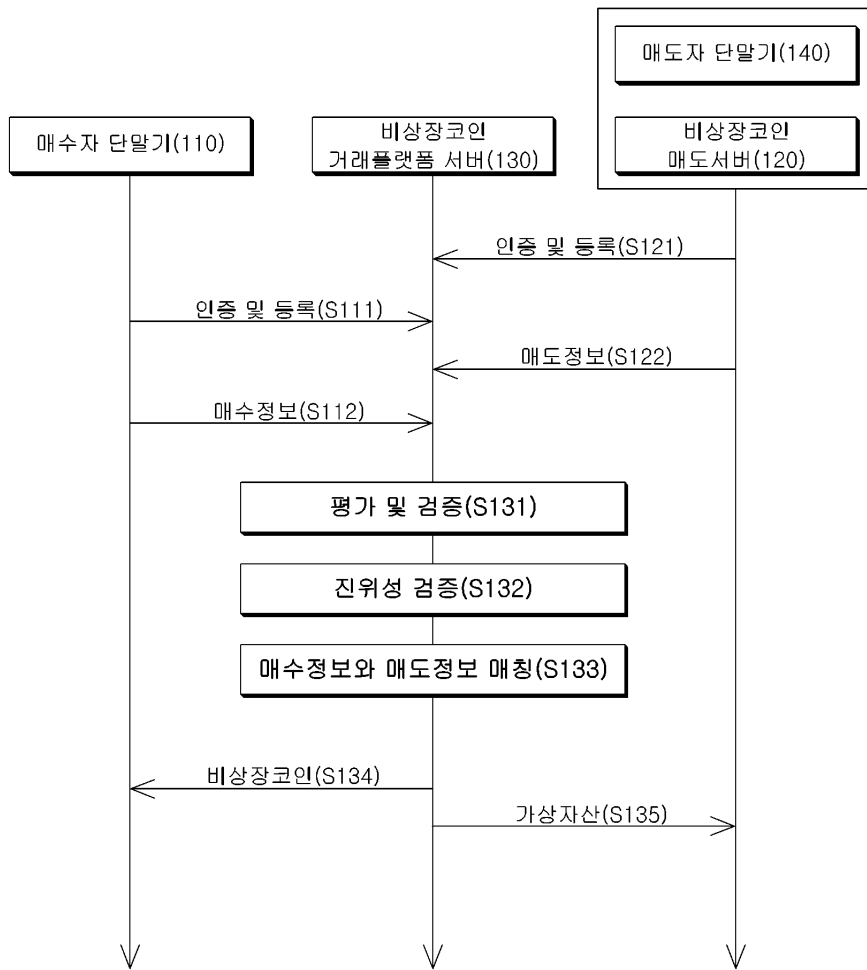
할 수도 있다.

- [0082] 여기서,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매수자 단말기(110)의 동의하에, 매수자 단말기(110)로부터 예치되거나 대여받은 비상장코인을, 미리설정된 수익구간에서, 제3자의 매수자 단말기로 매도하도록 하거나 추가적으로 대여하도록 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거나, 시세가 안정적이거나 재정적으로 건전하거나 시장성이 있는 다른 비상장코인 또는 상장코인으로 교환하여 보유하도록 할 수도 있다.
- [0084] 도 3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한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법에 의한 매매거래 순서도를 예시한 것으로, 이를 참조하여,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 [0085] 우선, 매수자 단말기(110)가 인증절차를 거쳐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에 등록하고(S111), 매수자 단말기(110)로부터 특정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수량과 매수금의 매수정보를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로 전송한다(S112).
- [0086] 여기서, 매수자 단말기(110)에는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며,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과 등가로 교환된 가상자산이 저장된 제1전자지갑이 설치되고, 가상자산은 가상화폐 또는 NFT일 수 있다.
- [0087] 다음,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가 인증절차를 거쳐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에 등록하고(S121),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로부터,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로 전송한다.
- [0088] 여기서,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에는 비상장코인을 발행하며,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고,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제2전자지갑이 설치된다.
- [0089] 다음,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가, 매수자 단말기(110)로부터의 매수정보 및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로부터의 매도정보를 각각 수신하여, 제1전자지갑(111)의 가상자산과 제2전자지갑(121)의 비상장코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검증하며(S131), 매수정보와 매도정보의 진위성을 검증하고(S132), 매수정보와 매도정보를 매칭시켜(S133), 매수자 단말기(110) 및 비상장코인 매도서버(120)로 각각 전송한다.
- [0090] 예컨대, 평가 및 검증 단계(S131)에서는,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가치평가모듈(131)을 통해서, 현금으로의 환가 가치를 산정하여, 제1전자지갑(111)의 가상자산과 제2전자지갑(121)의 비상장코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검증하여서, 매매거래 이전에 가상자산과 비상장코인의 가치에 따른 매수금과 매수금이 적절한지 또는 정당한지 판단하여 매매거래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수자 단말기(110)와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로 통보하여 매매거래에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 [0091] 여기서, 가치평가모듈(131)은 기준거래소 실시간 가격을 통해 제1전자지갑(111)의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비상장코인 발행주체와 거래플랫폼 운영주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정에 따른 산출된 기준가를 통해 제2전자지갑(121)의 비상장코인을 평가할 수 있다.
- [0092] 또한, 진위성 검증 단계(S132)에서는,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가 매수정보와 매도정보의 진위성을 검증하여서, 내부 위변조에 의한 허위 디지털기록조작에 따른 가상자산과 허위 전자지갑 계정과 허위 매매정보를 식별하거나, 외부 해킹으로부터의 위변조를 식별하여서, 가상자산과 비상장코인간 허위거래를 차단하도록 할 수 있다.
- [0093] 다음,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매수자 단말기(110)로부터 매수승인정보를 수신하면, 제1전자지갑(111)의 매수총액이 제2전자지갑(121)의 매도총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제2전자지갑(121)으로부터 제1전자지갑(111)으로 비상장코인을 전송하여 저장하도록 하고(S134), 제1전자지갑(111)으로부터 제2전자지갑(121)으로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수금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전송하여 저장하도록 한다(S135).
- [0094] 한편,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며,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제3전자지갑(141)이 설치된, 매도자 단말기(140)를 통해,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로 전송하고,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130)는, 매수정보와 매도정보를 수신하여 검증하고 매칭시켜, 매수자 단말기(110) 및 매도자 단말기(140)로 각각 전송하며, 매수자 단말기(110)로부터 매수승인정보를 수신하면 제1전자지갑(111)의 매수총액이 제3전자지갑(141)의 매도총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제3전자지갑(141)으로부터 제1전자지갑(111)으로 비상장코인을 전송하고, 제1전자지갑(111)으로부터 제3전자지갑(141)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한다.
- [0096]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은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구성에 의해서, 비상장코인 거래시,

도면2



도면3



【심사관 직권보정사항】

【직권보정 1】

【보정항목】 청구범위

【보정세부항목】 청구항 1

【변경전】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며,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과 등가로 교환된 가상자산이 저장된 제1전자지갑이 설치되고, 특정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수량과 매수금의 매수정보를 전송하는, 매수자 단말기;

비상장코인을 발행하며,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고,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제2전자지갑이 설치되고,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전송하는, 비상장코인 매도서버; 및

상기 매수정보와 상기 매도정보를 수신하여 검증하고 매칭시켜, 상기 매수자 단말기 및 상기 비상장코인 매도서버로 각각 전송하며, 상기 매수자 단말기로부터 매수승인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제1전자지갑의 매수총액이 상기 제2전자지갑의 매도총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상기 제2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 상기 비상장코인을 전송하고,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2전자지갑으로 상기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는, 현금으로의 환가 가치를 산정하여, 상기 제1전자지갑의 가상자산과 상기 제2전자지갑의 비상장코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검증하는 가치평가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는, 이전 거래시의 상기 매수자 단말기에 해당하는 상기 제1전자지갑과 매수자 개인정보 및 상기 비상장코인 매도서버에 해당하는 상기 제2전자지갑과 운영주체정보의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검증하는 검증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제1전자지갑의 가상자산의 교환 가치가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에 의해 검증되고 평가되어 인정된 경우에만,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가 상기 매수자 단말기의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에 대한 매매 참여를 허용하고,

상기 가치평가모듈은 기준거래소 실시간 가격을 통해 상기 제1전자지갑의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비상장코인 발행주체와 거래플랫폼 운영주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정에 따라 산출된 기준가를 통해 상기 제2전자지갑의 비상장코인을 평가하고,

상기 검증모듈은, 매도위탁받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비상장코인의 총액에 상응하여, 상기 비상장코인 매도서버에 해당하는 발행주체기업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자산, 지적자산 등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담보로 설정하고, 해당 담보비율에 해당하는 비상장코인의 총액을 매도 등록하도록 하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

【변경후】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며,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과 등가로 교환된 가상자산이 저장된 제1전자지갑이 설치되고, 특정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수량과 매수금의 매수정보를 전송하는, 매수자 단말기;

비상장코인을 발행하며, 비상장코인을 매매하는 거래앱이 설치되고, 매도하고자 하는 특정 수량의 비상장코인이 저장된 제2전자지갑이 설치되고, 해당 비상장코인에 대한 매도량과 매도금의 매도정보를 전송하는, 비상장코인 매도서버; 및

상기 매수정보와 상기 매도정보를 수신하여 검증하고 매칭시켜, 상기 매수자 단말기 및 상기 비상장코인 매도서버로 각각 전송하며, 상기 매수자 단말기로부터 매수승인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제1전자지갑의 매수총액이 상기 제2전자지갑의 매도총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상기 제2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 상기 비상장코인을 전송하고, 상기 제1전자지갑으로부터 상기 제2전자지갑으로 상기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는, 현금으로의 환가 가치를 산정하여, 상기 제1전자지갑의 가상자산과 상기 제2전자지갑의 비상장코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검증하는 가치평가모듈을 포함하며,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는, 이전 거래시의 상기 매수자 단말기에 해당하는 상기 제1전자지갑과 매수자 개인정보 및 상기 비상장코인 매도서버에 해당하는 상기 제2전자지갑과 운영주체정보의 블랙리스트 등록 여부를 판단하여 검증하는 검증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제1전자지갑의 가상자산의 교환 가치가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에 의해 검증되고 평가되어 인정된 경우에만,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 서버가 상기 매수자 단말기의 상기 비상장코인 거래플랫폼에 대한 매매 참여를 허용하고,

상기 가치평가모듈은 기준거래소 실시간 가격을 통해 상기 제1전자지갑의 가상자산을 평가하고, 비상장코인 발행주체와 거래플랫폼 운영주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정에 따라 산출된 기준가를 통해 상기 제2전자지갑의 비상장코인을 평가하고,

상기 검증모듈은, 매도위탁받거나 매도하고자 하는 비상장코인의 총액에 상응하여, 상기 비상장코인 매도서버에 해당하는 발행주체기업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자산, 지적자산의 지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담보로 설정하고, 해당 담보비율에 해당하는 비상장코인의 총액을 매도 등록하도록 하는,

비상장코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시스템.